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대상 기술 요건 완화 등〉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52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 안 경 위	1
II .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III . 검 토 의 견	2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대상 요건 중 “비밀관리성” 제외	2
2. 법원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기록 송부요구 근거 마련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5.
3. 회부연월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동일한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5).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대상 요건 중 “비밀관리성” 제외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비밀로 관리되는(비밀관리성), ③중소기업기술¹⁾(경제적유용성)로 규정하여 보호대상 기술의 요건으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의 3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제외하여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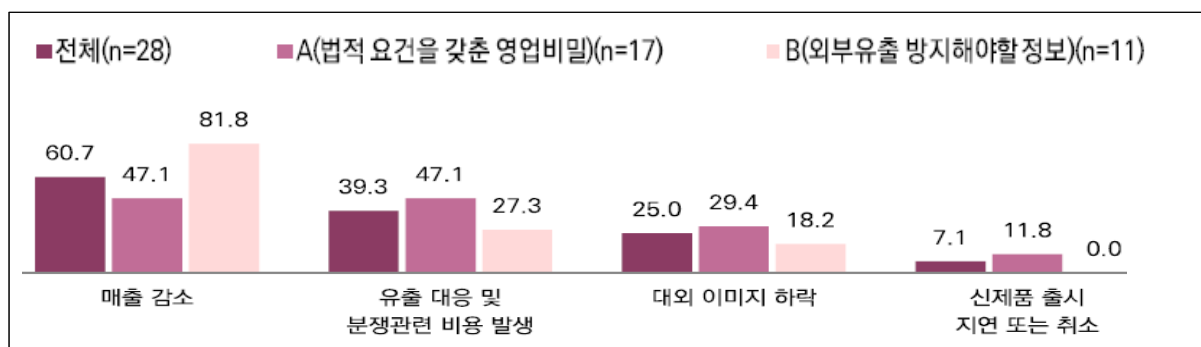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u>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다.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u> ----- ----- ----- ----- ----- ----- ----- ----- 나. 다. (현행과 같음)

“2023년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상 또는 경영상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8,123개사 중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유용성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비밀 보유기업(2,733개사)보다 3가지 법적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외부유출방지가 필요한 정보²⁾를 보유한 기업(5,390개사)이 더 많고,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우의 매출감소 피해가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할 정보 중 생산·제조 관련 노하우·공정·방법이 전체의 63.6%를 차지(해당 실태조사)

[표 1] 외부 유출로 경험한 피해 종류(2023년 영업비밀보호 실태조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호대상 중소기업기술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비밀정보 표시, 접근 통제 및 대상자 제한 등 엄격한 비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입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³⁾.

다만, 기술침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들의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3)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례 (자료: 지식재산처)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법률 개정을 통해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려 한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24.8.29. 선고 2023나2054809, 출처: 영업비밀 보호센터)

기술자료 등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협정(WTO TRIPs)⁴⁾ 등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도 보호대상 정보의 요건으로 “비밀관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 법령과의 체계적 정당성 확보 및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 현행 기술보호법제 보호대상 요건 비교

구분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보호대상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자료	기술자료
기술보호 대상요건	경제적유용성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u>비밀관리성</u>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u>비밀관리성</u>	경제적유용성 <u>비밀관리성</u>

4)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협정(WTO TRIPs)

영문	국문
SECTION 7: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i>Article 39</i> 2. Natural and legal persons shall hav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information lawfully within their control from being disclosed to, acquired by, or used by others without their consent in a manner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 so long as such information: (a)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and (c)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2.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 정보의 종류를 <u>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인 것</u> 나. 비밀이기 때문에 <u>상업적 가치</u>를 갖는 것, 그리고 다.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u>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u>

자료: 지식재산처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기술 보호범위가 불분명해져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극 반대하는 입장으로, ①개정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기술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을 오히려 기술유출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고, ②현행 지식재산제도와 비교할 때 기술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술혁신을 방해할 수 있으며, ③주요국 입법례를 살펴보다라도 중소기업 등 특정 계층이 보유한 기술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한 사례는 없고, ④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은 일반 기술을 모두 보호하고자 하면, 보호대상의 범위가 모호하여 거래 상대방의 기술침해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과의 거래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의 법률간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행 기술보호법제 상 “비밀관리성” 요건은 보호가치 있는 정보 및 규제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별하여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개 및 자유 이용이 가능한 정보와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의 보호를 위한 요건완화 등 보호 대상범위의 확대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법체계에서 규정하는 기술보호 요건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술 보호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삭제함으로써 보호 주체가 모호해지고, 비밀관리에 대한 기업의 노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참고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⁵⁾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제2213221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제2215533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제2216367호)

2. 법원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기록 송부요구 근거 마련

개정안은 법원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6)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에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현행	개정안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u>침해사건</u> 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u>제기된 경우</u>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 ----- ----- <u>침해사건 또는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u> ----- ----- ----- <u>제기된 경우, 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 -----.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1. (현행과 같음)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u>현장조사</u>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2. ----- <u>조사</u> ----- ----- -----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3. (현행과 같음)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⁷⁾를 실시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⁸⁾에 대해서도 해당 사

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2.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건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이미 축적된 조사 자료와 증거물들을 민사소송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중복된 노력을 덜어주고, 증거확보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분쟁 해결 기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조정제도의 취지가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에 갈음하여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등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⁹⁾, 조정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추후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술침해 혐의를 받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피해기업이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증거조사용으로 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과정을 이용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조정제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자료 뿐 아니라, 조정중재 관련 자료도 활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기대할 수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10) 현행 「민사조정법」에서도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함으로써 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IV. 참고자료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개요 및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개요

- **(목적)** 기업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을 통한 원만한 타협유도,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소, 분쟁대응 비용지원 등으로 피해기업 구제
- **(지원내용)**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로 분쟁 해결 지원
 - * (조정) 조정부 도움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당사자간 중재 합의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해결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에 대한 평가 의뢰 및 비용 지원	최대 4,500만원

□ 지원현황

- '15년 이후 총 256건의 접수, 243건 종료, 13건 진행 중(성립률 50.0%)

구분	접수	진행중	조정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취하	조정중단*	각하**	계
15년	22	-	3	4	7	1	14	-	15
16년	17	-	6	8	14	2	1	-	3
17년	19	-	2	7	9	3	7	-	10
18년	19	-	3	9	12	-	7	-	7
19년	21	-	2	7	9	1	11	-	12
20년	30	-	6	5	11	-	19	-	19
21년	25	-	10	5	15	-	10	-	10
22년	24	-	9	1	10	1	13	-	14
23년	33	-	12	7	19	1	13	-	14
24년	20	-	4	3	7	-	13	-	13
25.9월	26	13	1	2	3	-	7	3	10
계	256	13	58	58	116	9	115	3	127
비율(%)	-	-	50.0%	50.0%	100.0%	7.1%	90.6%	2.4%	100.0%

* 조정중단 :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 각하 :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이 각하한 사건

2

부처별 기술침해 구제 제도(조정중재)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중기부	지식재산처	공정위	산업부
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발명진흥법	하도급법	산업기술보호법
제도명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산업기술분쟁조정
조정대상	중소기업 기술	산업재산권, 영업비 밀, 직무발명	대금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등	산업기술
신청주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인, 영업비밀보유자 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조정위원	판사, 변호사 등 50명 ※ 사건별 3명 이내 조정부 구성(중재부는 최대 5명)	변호사, 변리사 등 80명	9명	변호사, 변리사 등 13명
운영 사무국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접수 건수 (‘24년)	20건	160건	1,105건 (기술유용 8건)	0건
조정성립률 *	50%	62%	36% * 신청대비 조정비율	-
신청인 지원	• 대리인선임비용 • 소송비용(불성립시) • 손해액산정비용	-	-	-

* 중기부·지식재산처 성립률은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비율임